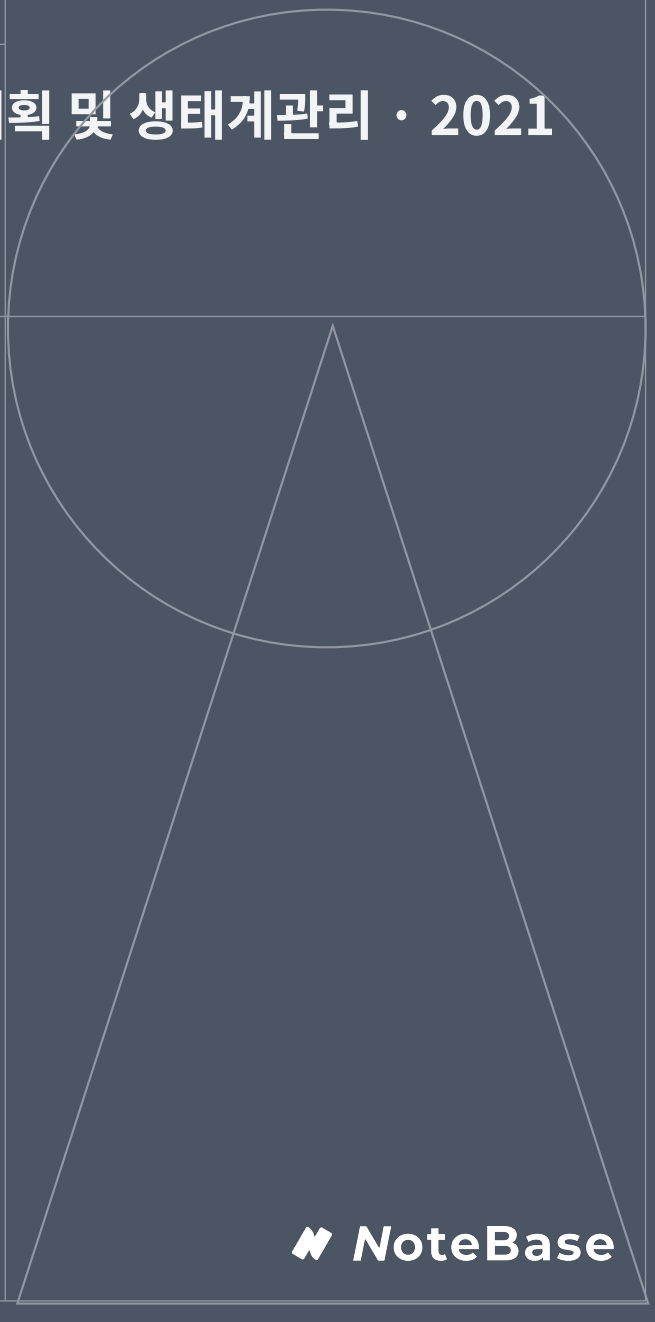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1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1

문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공원 - 1천5백제곱미터 이상

② 수변공원 - 1만제곱미터 이상

③ 도보권 근린공원 - 3만제곱미터 이상

④ 묘지공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2번

①

어린이공원의 규모 기준은 원칙적으로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mJ3oPNN6FSYpE_1q45a_pt6gLT__NHh.webp

②

수변공원은 **규모 제한이 없으므로** 최소면적을 1만제곱미터로 정한 연결이 잘못되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xciwzt1-mRHi0W9Gk8jWH4Vfg_a6AGHq.webp

NoteBase

③

도보권근린공원의 규모 기준은 원칙적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Au1-_xOXme3BXIBQcho85eczNBWSoxef.webp

④

묘지공원의 규모 기준은 원칙적으로 **1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라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adhpwYj7ZCieynh73M97TVfvzzmCKGa.webp

NoteBase

문 2. 「경관법」 상 '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④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 3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선지의 '10년마다'가 틀리다.

경관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의 경관계획 수립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 사항**이다.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 군의 시장 · 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두 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경관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④ 경관계획은 도시 · 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 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 · 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NoteBase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NoteBase

문 3.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등급 권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② 2등급 권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③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④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정답 2번

①

생태계의 우수성이나 경관의 수려함이 특히 두드러지는 지역은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2025.10.1>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②

생물의 지리적 분포 경계에 있는 생태계나 주요 식생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은 **2등급이 아니라 1등급 권역**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2025.10.1>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NoteBase

③

3등급 권역은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곳 중 개발·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2025.10.1>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④

별도관리지역에는 **다른 법률로 보전되며 역사·문화·경관 가치를 지닌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이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2025.10.1>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 · 문화적 ·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NoteBase

문 4.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농업공원은 설치기준·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시텃밭은 생태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시 포함한다.

③ 도시농업공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간이므로 공공재 성격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시텃밭의 설치로 인한 도시농업공원의 생태적 기능 약화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도시농업공원은 **설치기준·유치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6.(2)(다)
4-2-6. 도시농업공원
(2)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다) 도시농업공원은 설치기준·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시텃밭은 생태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6.(2)(라)
4-2-6. 도시농업공원
(2)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라) 도시텃밭은 생태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농업공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간이므로 **공공재 성격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6.(2)(나)
4-2-6. 도시농업공원
(2)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나) 도시농업공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간이므로 공공재 성격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도시텃밭의 설치로 인한 **생태적 기능 약화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6.(2)(마)
4-2-6. 도시농업공원
(2)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마) 도시텃밭의 설치로 인한 도시농업공원의 생태적 기능약화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반려동물공원
② 생태공원
③ 놀이공원
④ 가로공원

정답 1번

①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생태공원·놀이공원·가로공원**이며, 반려동물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0. 8., 2017. 9. 21, 2020.10.5, 2025.3.27>
1. 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 · 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9. 1. 8.]

②

생태공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0. 8., 2017. 9. 21, 2020.10.5, 2025.3.27>
1. 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 · 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9. 1. 8.]

NoteBase

③

놀이공원은 **놀이·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0. 8., 2017. 9. 21, 2020.10.5, 2025.3.27>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9. 1. 8.]

④

가로공원은 **가로변이나 주거지 인근에서 시민의 휴식과 경관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0. 8., 2017. 9. 21, 2020.10.5, 2025.3.27>
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9. 1. 8.]

NoteBase

문 6. 「자연공원법」 상 용도지구 중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③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 행위

④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정답 3번

①

공원마을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6.5.29, 2020.5.26, 2023.8.8, 2026.7.7>
3. 공원마을지구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②

공원마을지구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와 공원사업이 가능하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6.5.29, 2020.5.26, 2023.8.8, 2026.7.7>
2. 공원자연환경지구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NoteBase

③

불교 의식·승려의 수행과 생활·신도 교화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행위기준**이다. 이 허용범위가 공원마을지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6.5.29, 2020.5.26, 2023.8.8, 2026.7.7>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6. 공원문화유산지구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및 이축 행위

④

공원마을지구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이 허용된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6.5.29, 2020.5.26, 2023.8.8, 2026.7.7>
3. 공원마을지구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NoteBase

문 7. 미기후(microclimat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존층은 미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② 도시 내에서도 장소에 따라 미기후는 달라질 수 있다.

③ 지상의 피복재료는 미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미기후는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미기후는 **지형·지표 피복·식생·건물 배치 같은 국지적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성층권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는 광역적인 대기 환경과 관련되므로, 장소별 미기후 차이를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미기후는 지표 부근의 좁은 공간에서 나타나는 기온·습도·바람 등의 기후 특성이다. 주변의 넓은 지역과 기후가 다를 수 있으며, 가까운 장소끼리도 지표와 공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① X: 오존층은 성층권에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광역적인 대기·복사 환경과 관련된 현상이며, 좁은 장소의 미기후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국지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미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지형, 지표 피복재료, 식생, 건물 배치** 등을 들어야 한다.

② O: 같은 도시 안에서도 **녹지와 건물·포장면의 분포**가 달라 기온·습도·바람에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나무 그늘이 있고 증산이 일어나는 공원은 포장면이 넓은 장소보다 더 서늘한 미기후를 형성할 수 있다.

③ O: 지표 피복재료에 따라 **태양복사의 반사·흡수, 열의 저장·방출, 수분 증발** 특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가 지표면과 그 위 공기의 온도 등에 영향을 주므로, 포장면과 식생으로 덮인 지표는 서로 다른 미기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O: 지형의 경사와 방향은 **일사량과 바람의 흐름**을 바꾸어 미기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북반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남향 사면이 북향 사면보다 햇빛을 더 많이 받아 따뜻한 미기후를 형성한다.

NoteBase

문 8.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상 수목유형에 따른 전정시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상록침엽수 - 5월 초순▨중순
② 유실수 - 개화가 끝난 직후
③ 낙엽활엽수 - 어느 때나 가능
④ 화목류 - 싹트기 전 이른 봄

정답 1번

①

상록침엽수의 일반적인 전정 시기는 **5월 초순▨중순**이며, 동절기를 피한 10▨11월도 포함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식생 관리(KCS 34 99 10:2024) 3.1.1(7)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식생 관리(KDS 34 99 10:2024) 4.2.3(2) 표 4.2-1
4. 설계

4.2 전정설계

4.2.3 전정 시기 및 횟수

(2) 표 4.2-1은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정 시기이며,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4.2-2와 같다. 이외의 기간에는 필요시 약전정을 설계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7Pa_K6UpDyUz6iQupLj6Rky0GPcn3O1.webp

NoteBase

②

유실수의 일반적인 전정 시기는 **싹트기 전 이른 봄**이다. 개화가 끝난 직후는 수목 유형별 표에서 화목류에 대응하는 시기이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식생 관리(KCS 34 99 10:2024) 3.1.1(7)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식생 관리(KDS 34 99 10:2024) 4.2.3(2) 표 4.2-1
4. 설계

4.2 전정설계

4.2.3 전정 시기 및 횟수

(2) 표 4.2-1은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정 시기이며,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4.2-2와 같다. 이외의 기간에는 필요시 약전정을 설계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7Pa_K6UpDyUz6iQupLj6Rky0GPcn3O1.webp

NoteBase

③

낙엽활엽수의 일반적인 전정 시기는 **발아한 잎이 굳어지는 7~8월과 낙엽기인 11~3월**이다. 이외의 기간에는 필요시 약전정을 하므로, 어느 때나 전정할 수 있다는 연결은 부적절하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식생 관리(KCS 34 99 10:2024) 3.1.1(7)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식생 관리(KDS 34 99 10:2024) 4.2.3(2) 표 4.2-1
4. 설계

4.2 전정설계

4.2.3 전정 시기 및 횟수

(2) 표 4.2-1은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정 시기이며,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4.2-2와 같다. 이외의 기간에는 필요시 약전정을 설계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7Pa_K6UpDyUz6iQupLj6Rky0GPcn3O1.webp

NoteBase

④

수목 유형별 표에서 화목류의 일반적인 전정 시기는 **개화가 끝난 직후**이다. 싹트기 전 이른 봄은 유실수에 대응하는 시기이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식생 관리(KCS 34 99 10:2024) 3.1.1(7)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식생 관리(KDS 34 99 10:2024) 4.2.3(2) 표 4.2-1
4. 설계

4.2 전정설계

4.2.3 전정 시기 및 횟수

(2) 표 4.2-1은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정 시기이며,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4.2-2와 같다. 이외의 기간에는 필요시 약전정을 설계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7Pa_K6UpDyUz6iQupLj6Rky0GPcn3O1.webp

NoteBase

문 9.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태환경 관련 협약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체결됨
· 이 협약에 의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① 람사르협약
② 생물다양성협약
③ 기후변화협약
④ 몬트리올의정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정서**이다. 협약의 기본 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등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핵심 풀이

1992년 리우정상회의: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에 채택되었고, 같은 해 6월 리우정상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도 이 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므로, **리우정상회의라는 단서만으로는 두 협약을 구별하기 어렵다**.

1997년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약의 기본 틀에 따라 선진국 등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의 모협약**이라는 단서가 기후변화협약을 가리킨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다루므로 교토의정서와 연결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0. <보기>는 「조경기준」상 조경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_____, _____, _____)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생태적 - 효율적 - 심리적
② 생태적 - 효율적 - 심미적
③ 생태적 - 기능적 - 심리적
④ 생태적 - 기능적 - 심미적

정답 4번

공통 해설

조경은 경관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조경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문 11. 영양분 함량과 일차생산량에 따라 호수를 빈영양호와 부영양호로 구분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빈영양호 : 소수의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군이 서식

② 부영양호 : 일반적으로 수심이 낮음

③ 부영양호 : 순일차생산성이 낮음

④ 빈영양호 : 빙하와 계곡에서 대다수의 물이 공급됨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부영양호는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식물성 플랑크톤과 수생식물의 생산이 활발하므로, 순일차생산성이 일반적으로 **높다**. '순일차생산성이 낮음'은 빈영양호의 특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빈영양호는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부족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식이 제한된다.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와 생물량이 적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종의 수가 반드시 적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부영양호는 일반적으로 빈영양호보다 **수심이 얕은 경향**이 있다. 퇴적물과 유기물이 쌓이면 호수가 얕아지고, 얕은 호수에서는 바닥의 영양염류가 수층으로 공급되기 쉬워 높은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수심만으로 영양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깊은 부영양호도 존재한다.

③ X: 순일차생산성은 생산자가 광합성으로 만든 유기물의 총량에서 생산자 자신의 호흡으로 소비한 양을 뺀, 단위 시간당 순생산량이다. 부영양호는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생산자의 생장이 활발하므로 순일차생산성이 일반적으로 **높다**. 따라서 '순일차생산성이 낮음'은 '순일차생산성이 높음'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빙하의 융해수나 산지 계곡물처럼 **영양염류 함량이 적은 물**을 주로 공급받는 호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가 적어 빈영양 상태를 나타내기 쉽다. 선지는 이러한 빈영양호의 전형적 유입 환경을 설명한 것으로, 모든 빈영양호가 반드시 빙하나 계곡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2. 수목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가해습성에 따라 분류할 때 가해습성이 동일한 해충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회양목명나방 - 응애

② 꽃매미 - 소나무좀

③ 큰팽나무이 - 도토리거위벌레

④ 응애 - 깍지벌레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응애와 깍지벌레는 모두 식물 조직을 찔러 즙액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이다. 가해습성은 해충의 생김새가 아니라 식물에 피해를 주는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회양목명나방은 유충이 회양목의 잎을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이고, 응애는 식물 조직의 즙액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이다. 잎을 먹어 없애는 방식과 즙액을 흡수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② X: 꽃매미는 수목의 수액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이고, 소나무좀은 수피 밑이나 새가지 내부에 굴을 파며 가해하는 **천공성 해충**이다. 두 해충은 각각 흡즙과 천공으로 구분한다.

③ X: 큰팽나무이는 약충이 팽나무 잎에 뿔 모양의 벌레혹을 만드는 **충영 형성 해충**이다. 도토리거위벌레는 유충이 도토리 내부를 먹는 **종실 가해 해충**이므로, 두 해충의 가해습성은 다르다. 충영은 해충의 자극으로 식물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생긴 벌레혹을 뜻한다.

④ O: 응애와 깍지벌레는 모두 식물 조직을 찔러 즙액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이다. 응애는 주로 잎에서, 깍지벌레는 잎이나 가지 등에 붙어 흡즙하여 식물의 생육을 약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NoteBase

문 1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상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을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③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두지 않는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3번

①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②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2024.5.7>

NoteBase

③

모든 사람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을 두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법정 지정·공고 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이면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NoteBase

문 14. 식생환경분석항목 중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가) 총조사구에 대한 해당 종이 출현한 조사구의 비율
(나) 단위면적당 개체수로, 조사 방형구 대비 한 종의 개체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

① (가): 빈도, (나): 밀도
② (가): 종다양도, (나): 피도
③ (가): 빈도, (나): 종다양도
④ (가): 피도, (나): 밀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빈도는 **해당 종이 출현한 조사구의 비율**이고, 밀도는 **단위면적당 해당 종의 개체수**이다. 조사구별 출현 여부를 세는지, 면적 안의 개체수를 세는지가 구별 기준이다.

대응 관계 해설

(가) 빈도: 전체 조사구 중 해당 종이 출현한 조사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 조사구에 개체가 하나 있든 여러 개 있든 **출현한 조사구 하나로 센다**. 피도는 식물이 지표면을 덮는 면적의 비율이므로, 출현한 조사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도와 다르다.

(나) 밀도: 해당 종의 개체수를 조사한 총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면적에 몇 개체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종다양도는 종의 수와 종별 개체수 분포 등을 반영하는 군집의 다양성이므로, 한 종의 단위면적당 개체수와 다르다. 다만 보기의 '백분율로 표시'는 밀도의 일반적인 정의로는 부정확하다. 밀도는 보통 개체/m^2 등으로 표시하며, 한 종의 개체수가 전체 종의 총개체수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은 상대밀도이다.

따라서 (가)는 빈도, (나)는 밀도이며, 이 대응은 ①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수목의 피해 원인 중 기상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겨울철 수간이 동결하는 과정에서 바깥쪽의 변재부위가 안쪽에 단열되어 있는 심재부위보다 더 심하게 수축함으로써, 두 부위 간에 수축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장력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

① 만상(晩霜)
② 상열(霜裂)
③ 조상(早霜)
④ 피소(皮燒)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겨울철 변재와 심재의 **수축 차이로 생긴 장력** 때문에 줄기가 세로로 갈라지는 현상은 **상열(霜裂)**이다.

핵심 풀이

상열(霜裂)은 겨울철 동결 과정에서 수간이 수직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이다. 보기에서는 바깥쪽 변재가 안쪽에서 단열된 심재보다 더 크게 수축한다. 이때 두 부위의 **수축 불균형으로 장력이 발생**하여 줄기가 세로로 갈라지므로 상열에 해당한다.

만상(晩霜)은 봄철의 늦서리이고, 조상(早霜)은 가을철의 이른 서리이다. 만상 피해는 봄에 새로 자라는 잎이나 새순 등이, 조상 피해는 겨울을 앞두고 충분히 굳어지지 않은 조직이 서리로 손상되는 것이다. 이들은 **서리가 내리는 시기와 조직의 저온 피해**에 관한 개념으로, 보기의 수간 균열과 구별된다.

피소(皮燒)는 **강한 햇빛과 고온에 의한 수피 손상**을 말한다. 수피가 갈라지거나 괴사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 제시한 동결 중 변재·심재의 수축 불균형과는 발생 원인이 다르다.

NoteBase

문 16.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수요추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중률이란 최대일률이며 월간 방문객수에 대한 최대일 방문객수의 비율이다.

② 가동률이란 연평균 시설의 실제 이용률이다.

③ 회전율은 당일의 전체 방문객에 대하여 방문객이 가장 많은 시점의 방문객수 비율을 말한다.

④ 회전율과 이용객의 체류시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집중률(최대일률)은 **연간 방문객수에 대한 최대일 방문객수의 비율**이다. 따라서 기준을 '월간 방문객수'로 제시한 부분을 '연간 방문객수'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집중률은 연간 방문객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하루에 방문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로, 최대일률이라고도 한다. 최대일 방문객수를 비교하는 기준은 **월간이 아니라 연간 방문객수**이다. 연간 수요가 특정 하루에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나타낸다.

② O: 가동률은 시설이 실제로 이용되는 정도를 연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평균 시설의 실제 이용률**이라는 설명은 성수기와 비수기 등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시설이 얼마나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의 뜻에 부합한다.

③ O: 이 문항의 회전율은 **동시체재율**을 뜻한다. 하루 전체 방문객수에 대하여, 그날 사람이 가장 많이 머무는 시점에 동시에 체류하는 방문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하루 동안 다녀간 총인원과 한 시점에 공간을 이용하는 인원을 연결하므로 필요한 시설 규모를 추정하는 데 쓰인다.

④ O: 이 문항에서 정의한 회전율은 이용객의 체류시간과 관련된다. 방문객의 유입 양상 등 다른 조건이 같다면, **체류시간이 길수록 이용 시간이 서로 겹치는 사람이 많아져** 동시에 머무는 인원의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체류시간은 동시 이용인원을 추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

NoteBase

문 17.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km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①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km 이상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km 이상

③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km 이상

④ 자전거우선도로: 시속 20km 이상

정답 4번

①

자전거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상**이다.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속 20k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20km 이상**이다.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속 10k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NoteBase

③

자전거전용차로의 설계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20km 이상**이다.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속 10k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④

이 규칙은 **자전거우선도로의 설계속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시속 20km 이상이라는 설계속도 기준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에 적용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NoteBase

문 18.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②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③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④ 생태통로 조성에 관한 계획

정답 4번

①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대상 계획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②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대상 계획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③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대상 계획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NoteBase

④

생태통로 조성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대상 계획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시설 설치계획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뜻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 ·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NoteBase

문 19.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 설계기준」상 옥상녹화 시 도입 식물의 선택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토나 유기질 토양에서 길러진 다년초는 옥상녹화에 적합하다.
② 식재 기반층의 두께가 얇을 때는 평평한 뿌리분 식물을 심는다.
③ 포트묘 식물, 용기묘 식물 그리고 평평한 뿌리분 식물의 재배 토양은 주로 무기질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뿌리분의 높이가 식재 기반층 두께(토심)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1번

①
점토나 유기질 토양에서 길러진 다년초는 옥상녹화에 **적합하지 않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중 옥상녹화(KDS 34 70 46:2024) 4.2.9 (2)
4. 설계

4.2 옥상녹화 설계

4.2.9 도입식물

(2) 점토나 유기질 토양에서 길러진 다년초는 옥상녹화에 적합하지 않다.

②
식재 기반층이 얇은 경우에는 제한된 토심에 맞도록 **평평한 뿌리분 식물**을 심는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중 옥상녹화(KDS 34 70 46:2024) 4.2.9 (5)
4. 설계

4.2 옥상녹화 설계

4.2.9 도입식물

(5) 식재 기반층의 두께가 얇을 때는 평평한 뿌리분 식물을 심는다.

NoteBase

③

포트묘·용기묘·평평한 뿌리분 식물의 재배 토양은 **무기질 재료를 주성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중 옥상녹화(KDS 34 70 46:2024) 4.2.9 (6)
4. 설계

4.2 옥상녹화 설계

4.2.9 도입식물

(6) 포트묘 식물, 용기묘 식물 그리고 평평한 뿌리분 식물의 재배 토양은 주로 무기질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도입 식물의 **뿌리분 높이는 식재 기반층의 두께인 토심에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중 옥상녹화(KDS 34 70 46:2024) 4.2.9 (1)
4. 설계

4.2 옥상녹화 설계

4.2.9 도입식물

(1) 뿌리분의 높이가 식재 기반층 두께(토심)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NoteBase

문 20.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②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높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은 나무를 심을 것

③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정답 2번

①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②

수림대에는 **해안 쪽에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 선지는 식재 높이의 방향을 반대로 설명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③

방풍림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한다.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NoteBase

④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림 · 염화비닐망 등은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배치**해야 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 · 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NoteBase